보도시점 2024. 11. 28.(목) 12:00 (2024. 11. 29.(금) 조간)

소상공인 여러분!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지원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개선 등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또는 팩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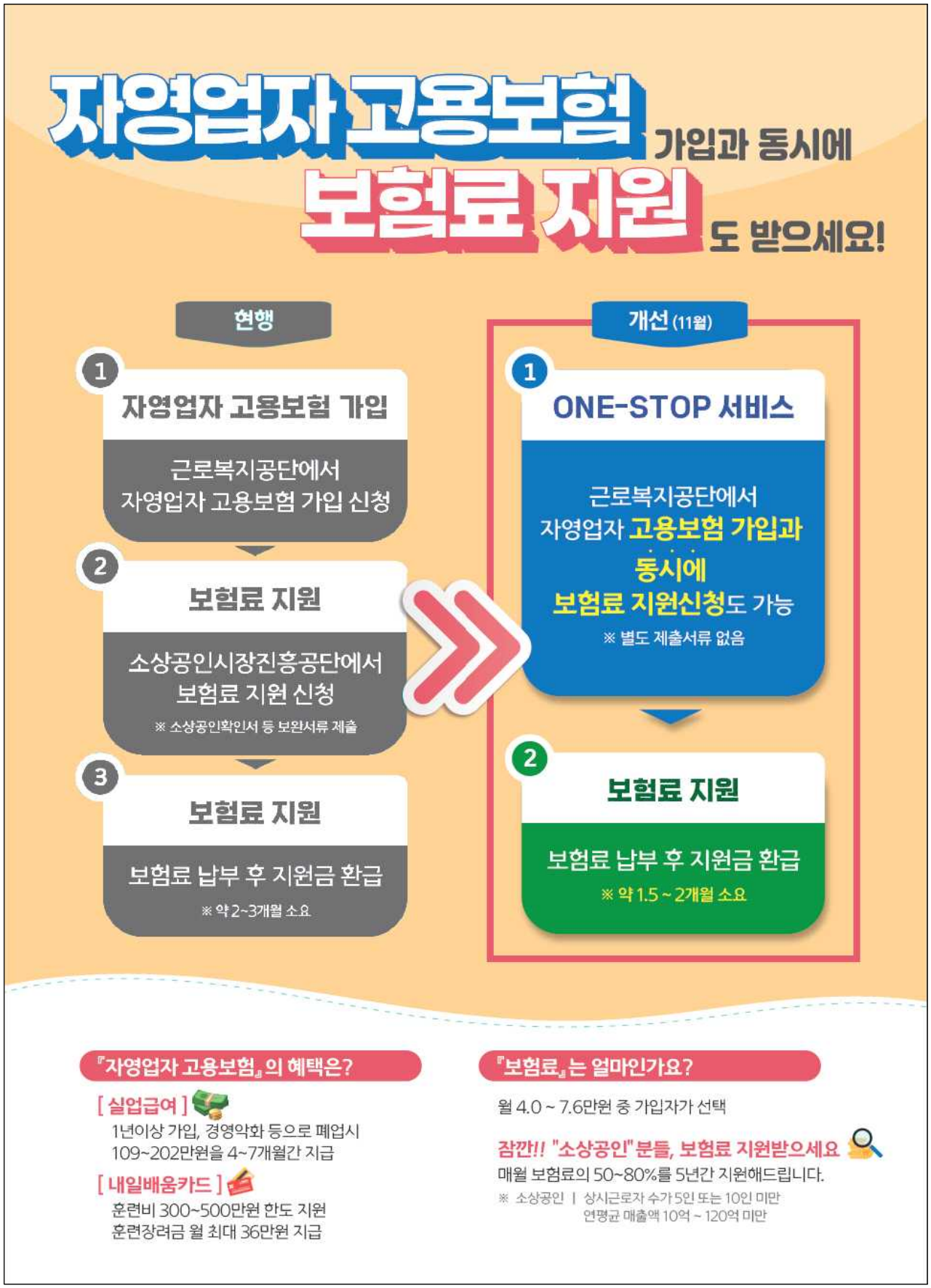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붙임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붙임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방법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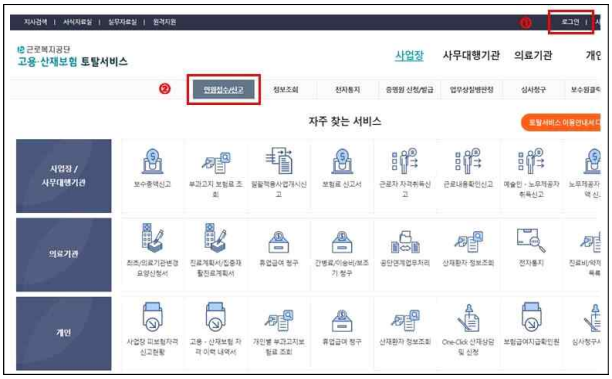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7347)
		담당자	사무관	김수명 (044-202-7927)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남경탁 (044-204-78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붙임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③ 보험가입신고 클릭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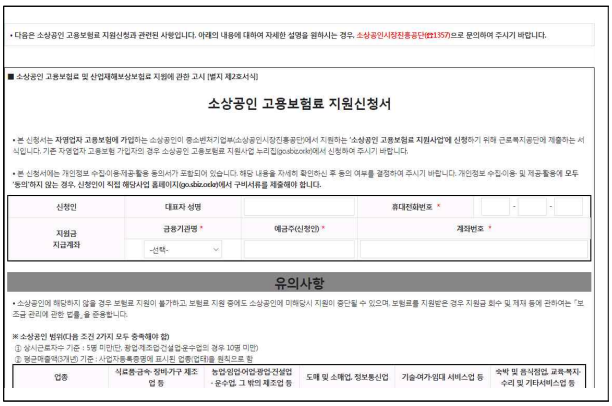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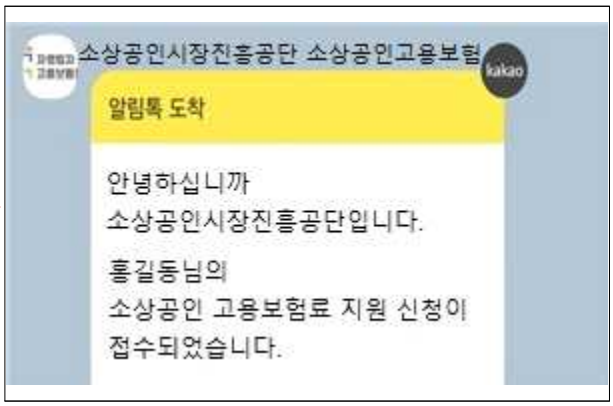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동의 선택





⑦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4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결과 안내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고용부 소관)

○ **(가입대상)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민간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지사

○ **(구직급여 지급)**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지급**(월 109~202만원)

* 6개월 연속적자,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매출 감소추세, 임신·출산 등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 :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자 본인이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

○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300~500만원 한도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지원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기부 소관)

○ **(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보험료 지원 신청(온라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월)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비율) : ('23) 납부보험료의 20~50% → ('24) 50~80%

** (지원규모) : ('23) 50억원, 2.5만명 → ('24) 150억원, 4만명(안)